

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에 관한 고시

포항시 고시 제 2017-86호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.

- 허가번호 : 17-13
- 점용위치 :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729-13번지선
- 점용목적 : 해수욕장 편의시설(판매·대여) 운영
- 허가기간 : 2017. 6. 24 ~ 2017. 8. 20
- 허가면적 : 3,000㎡
- 허가 연월일 : 2017. 6. 21
- 피허가자 주소 :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11번길 16
- 피허가자 성명 : (사)동해향토청년회 회장 강기철

2017. 6. 23

포 항 시 장

